

## TRADEMARK ASSIGNMENT COVER SHEET

Electronic Version v1.1  
Stylesheet Version v1.2

ETAS ID: TM376412

<b>SUBMISSION TYPE:</b>	NEW ASSIGNMENT		
<b>NATURE OF CONVEYANCE:</b>	CHANGE OF NAME		
<b>CONVEYING PARTY DATA</b>			
<b>Name</b>	<b>Formerly</b>	<b>Execution Date</b>	<b>Entity Type</b>
OSSTEM CO., LTD.		03/28/2006	Corporation: KOREA, REPUBLIC OF
<b>RECEIVING PARTY DATA</b>			
<b>Name:</b>	OSSTEM IMPLANT CO., LTD		
<b>Street Address:</b>	123(Gasan-dong), Gasandigital 2-ro		
<b>Internal Address:</b>	Geumcheon-gu		
<b>City:</b>	Seoul		
<b>State/Country:</b>	KOREA, REPUBLIC OF		
<b>Entity Type:</b>	Corporation: KOREA, REPUBLIC OF		
<b>PROPERTY NUMBERS Total: 1</b>			
<b>Property Type</b>	<b>Number</b>	<b>Word Mark</b>	
<b>Registration Number:</b>	3437834	OSSTEM	
<b>CORRESPONDENCE DATA</b>			
<b>Fax Number:</b>	2037875818		
<i>Correspondence will be sent to the e-mail address first; if that is unsuccessful, it will be sent using a fax number, if provided; if that is unsuccessful, it will be sent via US Mail.</i>			
<b>Phone:</b>	203-787-0595		
<b>Email:</b>	delpet@delpet.com		
<b>Correspondent Name:</b>	DeLio, Peterson & Curcio, LLC		
<b>Address Line 1:</b>	700 State Street		
<b>Address Line 2:</b>	Suite 402		
<b>Address Line 4:</b>	New Haven, CONNECTICUT 06511		
<b>ATTORNEY DOCKET NUMBER:</b>	OSST400001000		
<b>DOMESTIC REPRESENTATIVE</b>			
<b>Name:</b>	DeLio, Peterson & Curcio, LLC		
<b>Address Line 1:</b>	700 State Street		
<b>Address Line 2:</b>	Suite 402		
<b>Address Line 4:</b>	New Haven, CONNECTICUT 06511		
<b>NAME OF SUBMITTER:</b>	Peter W. Peterson		
<b>SIGNATURE:</b>	/Peter W. Peterson/		

OP \$40.00 3437834

**DATE SIGNED:**

03/11/2016

**Total Attachments: 25**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1.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2.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3.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4.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5.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6.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7.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8.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9.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10.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11.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12.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13.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14.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15.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16.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17.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18.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19.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20.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21.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22.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23.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24.tif  
source=OSST400001000\_Corporation-Register-OICL#page25.tif

[English Translation]

Corporation Register (cancellation included)

Registration No.	136166	
Number of Corporation Registration	110111-1361669	
Corporate Name	<del>DND-SYSTEM CO., LTD.</del>	. . . change . . . registration
	<del>DND-SYSYEM CO., LTD.</del>	1997.04.20 change 1997.04.28 registration
	<del>OSSTEM CO., LTD.</del>	2000.08.18 change 2000.08.31 registration
	<del>OSSTEM IMPLANT CO., LTD</del>	2006.03.23 change 2006.03.28 registration
Main Office	<del>#302 Gwanak Century Tower, 869-10, Bongcheon 4dong, Gwanak-gu, Seoul</del>	. . . change . . . registration
	<del>#704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24-3,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del>	1997.11.18 change 1997.11.18 registration
	<del>3rd Fl. Daech Bldg., 26-5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del>	1999.10.12 change 1999.10.12 registration
	<del>159-9, SamSung-dong, Gangnam-gu, Seoul</del>	2001.06.18 change 2001.06.29 registration
	<del>426-5, Gasan-dong, Geumcheon-gu, Seoul</del>	2005.01.03 change 2005.01.05 registration
	<del>123(Gasan-dong), Gasandigital 2-ro, Geumcheon-gu, Seoul</del>	2011.10.31 road name address 2015.05.29 registration

Means of Notice	<del>Published on a daily electronic newspaper issued in Seoul</del>	. . . change . . . registration
	<del>Published on a daily maeil business newspaper issued in Seoul</del>	1999.12.14 change 1999.12.17 registration
	<del>Published on a maeil business newspaper issued in Seoul only when it is not possible to publish on the internet homepage of the corporate (<a href="http://www.osstem.com">http://www.osstem.com</a>) owing to computer problems or other unavoidable circumstances.</del>	2010.05.29 change 2010.05.31 registration

Amount of one stock	<del>5,000 Won</del>	. . . change . . . registration
	500 Won	2000.03.09 change 2000.03.15 registration

Total Number of Stock to be issued	<del>40,000 Stock</del>	. . . change . . . registration
	500,000 Stock	1998.12.30 change 1998.12.31 registration

\* Parts drew by full line are registrations cancelled (changed, corrected).

Translated by Sena OH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136166	
등록번호	110111-1361669	
상 호	주식회사 디앤디시스템	변경
		등기
	주식회사 디앤디시스템	1997.04.20 변경
		1997.04.28 등기
	주식회사 오스템	2000.08.18 변경
		2000.08.31 등기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2006.03.23 변경
		2006.03.28 등기
본 점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9-10 관악센츄리타워 302호	변경
		등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중소기업진흥공단 704호	1997.11.18 변경
		1997.11.18 등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5 태오빌딩 3층	1999.10.12 변경
		1999.10.12 등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9	2001.06.18 변경
		2001.06.29 등기
	서울 금천구 가산동 426-5번지	2005.01.03 변경
		2005.01.05 등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가산동)	2011.10.31 도로명주소
		2015.05.29 등기
공고방법	서울사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전자신문에 게재한다	변경
		등기
	서울사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매일경제에 게재한다	1999.12.14 변경
		1999.12.17 등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osstem.com">http://www.osstem.com</a> )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2010.05.29 변경
		2010.05.31 등기
1주의 금액	금 5,000-원	변경
		등기
	금 500 원	2000.03.09 변경
		2000.03.15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주	변경
		등기
	500,000-주	1998.12.30 변경
		1998.12.31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5년11월10일 10시01분22초

등기번호	136166
------	--------

50,000,000 주	1999.12.14 변경 1999.12.17 등기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10,000 주		변경
보통주식	10,000 주	금 50,000,000 원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0,000 주		1997.04.27 변경
보통주식	40,000 주	금 200,000,000 원	1997.04.2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20,000 주		1998.12.31 변경
보통주식	120,000 주	금 600,000,000 원	1998.12.3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80,000 주		1999.12.16 변경
보통주식	180,000 주	금 900,000,000 원	1999.12.1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800,000 주		2000.03.09 변경
보통주식	1,800,000 주	금 900,000,000 원	2000.03.15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6,000,000 주		2000.03.15 변경
보통주식	6,000,000 주	금 3,000,000,000 원	2000.03.15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6,250,000 주		2000.10.31 변경
보통주식	6,250,000 주	금 3,125,000,000 원	2000.10.3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6,399,666 주		2001.01.11 변경
보통주식	6,399,666 주	금 3,199,833,000 원	2001.01.1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209,766 주		2002.08.20 변경
보통주식	7,209,766 주	금 3,604,883,000 원	2002.08.20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449,766 주		2003.04.10 변경
보통주식	7,449,766 주	금 3,724,883,000 원	2003.04.10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614,776 주		2003.08.07 변경
보통주식	7,614,776 주	금 3,807,388,000 원	2003.08.0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614,766 주		변경
보통주식	7,614,766 주	금 3,807,383,000 원	2003.08.07 경정
발행주식의 총수	7,824,766 주		2004.04.22 변경
보통주식	7,824,766 주	금 3,912,383,000 원	2004.04.22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8,834,766 주		2004.08.06 변경
보통주식	8,834,766 주	금 4,417,383,000 원	2004.08.0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9,834,766 주		2005.07.23 변경
보통주식	8,834,766 주		2005.07.25 등기
우선주식	1,000,000 주	금 4,917,383,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11,159,766 주		2005.09.29 변경
보통주식	10,159,766 주		2005.09.29 등기
우선주식	1,000,000 주	금 5,579,883,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11,460,653 주		2006.08.25 변경
보통주식	10,460,653 주		2006.08.28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5년11월10일 10시01분22초

등기번호	136166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우선주식	1,000,000 주	금 5,730,326,5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14,076,653 주		2007.02.02 변경
보통주식	13,076,653 주		2007.02.02 등기
우선주식	1,000,000 주	금 7,038,326,5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14,202,000 주		2007.02.23 변경
보통주식	14,202,000 주	금 7,101,000,000 원	2007.02.2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4,285,717 주		2015.04.22 변경
보통주식	14,285,717 주	금 7,142,858,500 원	2015.04.23 등기

목적			
1. 의료관련 소프트웨어 저문개발-공급서비스-	<1998.12.24 삭제	1998.12.24	등기>
1. 의료관련 소프트웨어 저문,개발,공급,서비스-	<1998.12.24 추가	1998.12.24	등기>
	<1999.10.12 삭제	1999.10.12	등기>
1. 소프트웨어 저문,개발,공급,서비스-	<1999.10.12 추가	1999.10.12	등기>
	<2003.03.21 삭제	2003.04.01	등기>
2. 의학정보 및 의료 기자재정보제공 PC통신망 구축운영-	<1998.12.24 삭제	1998.12.24	등기>
2.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1998.12.24 추가	1998.12.24	등기>
	<1999.10.12 삭제	1999.10.12	등기>
2.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업-	<1999.10.12 추가	1999.10.12	등기>
	<2003.03.21 삭제	2003.04.01	등기>
3. 여행 레저 및 후생복지사업-	<1998.12.24 삭제	1998.12.24	등기>
3.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등 관리-	<1998.12.24 추가	1998.12.24	등기>
	<2003.03.21 삭제	2003.04.01	등기>
4. 의약품, 의료기자재 제조 및 수입유통공급-	<1998.12.24 삭제	1998.12.24	등기>
4. 위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1998.12.24 추가	1998.12.24	등기>
	<1999.10.12 삭제	1999.10.12	등기>
4. 서적출판업-	<1999.10.12 추가	1999.10.12	등기>
	<2001.11.16 삭제	2001.11.27	등기>
5. 의학서적, 비디오테이프, CD-ROMS 수입유통-	<1998.12.24 삭제	1998.12.24	등기>
5. 정기간행물발행업-	<1999.10.12 추가	1999.10.12	등기>
	<2001.11.16 삭제	2001.11.27	등기>
6. 의학서적 및 서적번역 및 출판-	<1998.12.24 삭제	1998.12.24	등기>
6.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소매업-	<1999.10.12 추가	1999.10.12	등기>
	<2001.11.16 삭제	2001.11.27	등기>
7. 위 각항의 부대사업일체-	<1998.12.24 삭제	1998.12.24	등기>
7. 의료,전문 및 과학기기 도소매업-	<1999.10.12 추가	1999.10.12	등기>
	<2001.11.16 삭제	2001.11.27	등기>
8. 사무용 기계장비 도소매업-	<1999.10.12 추가	1999.10.12	등기>
	<2001.11.16 삭제	2001.11.27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5년11월10일 10시01분22초

등기번호	136166			
9. 무역업	<1999.10.12	추가	1999.10.12	등기>
10. 경영지문 및 경영상담업	<2001.11.16	삭제	2001.11.27	등기>
11. 컴퓨터설비지문업	<1999.10.12	추가	1999.10.12	등기>
12.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2001.11.16	삭제	2001.11.27	등기>
15.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1999.10.12	추가	1999.10.12	등기>
13. 인터넷컨텐츠 개발 및 인터넷사업	<2001.11.16	삭제	2001.11.27	등기>
14. 전자상거래	<1999.10.12	추가	1999.10.12	등기>
15. 건축업	<2001.11.16	삭제	2001.11.27	등기>
16. 통신판매업	<2001.07.26	추가	2001.08.09	등기>
17.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2001.11.16	삭제	2001.11.27	등기>
4.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자재 제조 및 수입유통공급	<2001.07.26	추가	2001.08.09	등기>
5. 서적출판업	<2001.11.16	삭제	2001.11.27	등기>
6. 정기간행물 발행업	<2003.03.21	삭제	2003.04.01	등기>
7.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소매업	<2001.11.16	변경	2001.11.27	등기>
8. 의료, 전문 및 과학기기 도소매업	<2003.03.21	삭제	2003.04.01	등기>
9. 사무용 기계장비 도소매업	<2001.11.16	변경	2001.11.27	등기>
10. 무역업	<2003.03.21	삭제	2003.04.01	등기>
11. 경영지문 및 경영상담업	<2001.11.16	변경	2001.11.27	등기>
12. 컴퓨터 설비 지문업	<2003.03.21	삭제	2003.04.01	등기>
13. 기타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2001.11.16	변경	2001.11.27	등기>
14. 인터넷 컨텐츠 개발 인터넷 사업	<2003.03.21	삭제	2003.04.01	등기>
	<2001.11.16	변경	2001.11.27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5년11월10일 10시01분22초

등기번호	136166
------	--------

<del>15. 전자상거래</del>	<2003.03.21 삭제 <2001.11.16 변경	2003.04.01 2001.11.27	등기> 등기>
<del>16. 건축업</del>	<2003.03.21 삭제 <2001.11.16 변경	2003.04.01 2001.11.27	등기> 등기>
<del>17. 통신판매업</del>	<2003.03.21 삭제 <2001.11.16 변경	2003.04.01 2001.11.27	등기> 등기>
<del>1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del>	<2003.03.21 삭제 <2001.11.16 변경 <2003.03.21 삭제	2003.04.01 2001.11.27 2003.04.01	등기> 등기> 등기>
1. 의료용구, 의료용재료 제조 및 판매업	<2003.03.21 추가	2003.04.01	등기>
2. 의료용구, 의료용재료 및 의약품 도소매업	<2003.03.21 추가	2003.04.01	등기>
3. 무역업 및 무역대행업	<2003.03.21 추가	2003.04.01	등기>
4.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 유지보수 및 서비스업	<2003.03.21 추가	2003.04.01	등기>
5. 데이터베이스, 정보처리 및 정보제공업	<2003.03.21 추가	2003.04.01	등기>
6. 인터넷 콘텐츠 개발 및 인터넷사업	<2003.03.21 변경	2003.04.01	등기>
7. 의료용 컴퓨터설비 및 사무용기기 도소매업	<2003.03.21 추가	2003.04.01	등기>
8. 정보통신 및 부가통신 서비스업	<2003.03.21 추가	2003.04.01	등기>
9. 의료기관 정보기술 및 경영컨설팅업	<2003.03.21 추가	2003.04.01	등기>
10. 도서출판, 정기간행물 발행 및 유통업	<2003.03.21 추가	2003.04.01	등기>
11. 교육서비스업	<2003.03.21 추가	2003.04.01	등기>
12.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2003.03.21 추가	2003.04.01	등기>
13. 의료관련 자금지원 및 알선업	<2003.03.21 추가	2003.04.01	등기>
14. 부동산임대업	<2003.03.21 추가	2003.04.01	등기>
15. 건축업	<2003.03.21 변경	2003.04.01	등기>
<del>16.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del>	<2003.03.21 변경	2003.04.01	등기>
16. 렌탈업	<2008.03.20 추가	2008.03.24	등기>
<del>17.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del>	<2008.03.20 변경 <2009.03.20 삭제	2008.03.24 2009.03.24	등기> 등기>
17. 임가공업	<2009.03.20 추가	2009.03.24	등기>
<del>1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del>	<2009.03.20 변경 <2014.03.21 삭제	2009.03.24 2014.04.03	등기> 등기>
18. 민간자격 발급, 운영 및 관리	<2014.03.21 추가	2014.04.03	등기>
19.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2014.03.21 변경	2014.04.03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최규옥 600510-*****									
1997년	01월	08일	취임	1997년	01월	08일	등기		
2000년	01월	08일	퇴임	2000년	02월	01일	등기		
2000년	01월	31일	취임	2000년	02월	01일	등기		
2003년	03월	21일	중임	2003년	03월	27일	등기		
2006년	03월	23일	중임	2006년	03월	28일	등기		
사내이사 최규옥 600510-*****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5년11월10일 10시01분22초



등기번호	136166
2009년 03월 20일 중입	2009년 03월 24일 등기
2012년 03월 28일 중입	2012년 04월 05일 등기
2015년 03월 18일 중입	2015년 03월 23일 등기
<del>이사 이용무 661215-*****</del>	
1997년 01월 08일 취임	1997년 01월 08일 등기
2000년 01월 08일 퇴임	2000년 02월 01일 등기
<del>이사 박대영 660720-*****</del>	
1997년 01월 08일 취임	1997년 01월 08일 등기
1998년 10월 26일 사임	1998년 10월 27일 등기
대표이사 최규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삼부(아) 6동 38호	
1997년 01월 08일 취임	1997년 01월 08일 등기
2000년 01월 08일 퇴임	2000년 02월 01일 등기
2000년 01월 31일 취임	2000년 02월 01일 등기
대표이사 최규옥 6005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삼부(아) 6동 38호	
2000년 01월 31일 취임	2000년 02월 01일 등기
대표이사 최규옥 6005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한양아파트 디동 102호	
2000년 08월 01일 주소변경	2001년 01월 11일 등기
2003년 03월 21일 중입	2003년 03월 27일 등기
대표이사 최규옥 6005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한양아파트 에이치 207	
2005년 02월 22일 주소변경	2005년 04월 01일 등기
2006년 03월 23일 중입	2006년 03월 28일 등기
2009년 03월 20일 중입	2009년 03월 24일 등기
대표이사 최규옥 6005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 에이치동 207호(여의도동, 한양아파트)	
2012년 03월 28일 중입	2012년 04월 05일 등기
2015년 03월 18일 중입	2015년 03월 23일 등기
<del>감사 박성희 630610-*****</del>	
1997년 01월 08일 취임	1997년 01월 08일 등기
1998년 10월 26일 사임	1998년 10월 27일 등기
<del>이사 차진영 600104-*****</del>	
1998년 10월 26일 취임	1998년 10월 27일 등기
2001년 10월 26일 퇴임	2001년 11월 08일 등기
<del>감사 김정근 600220-*****</del>	
1998년 10월 26일 취임	1998년 10월 27일 등기
2001년 01월 10일 사임	2001년 01월 16일 등기
<del>이사 유혁근 600217-*****</del>	
2000년 01월 31일 취임	2000년 02월 01일 등기
2003년 03월 21일 중입	2003년 03월 27일 등기
2006년 03월 23일 중입	2006년 03월 28일 등기
2008년 03월 20일 사임	2008년 03월 24일 등기
<del>감사 김서경 600807-*****</del>	
2000년 06월 26일 취임	2000년 06월 28일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5년11월10일 10시01분22초

등기번호	136166
2003년 03월 21일 퇴임	2003년 03월 27일 등기
<del>이사 임창준 550504 *****</del>	
2001년 01월 08일 취임	2001년 01월 09일 등기
2002년 08월 17일 사임	2002년 08월 20일 등기
<del>이사 송재경 600430 *****</del>	
2001년 01월 08일 취임	2001년 01월 09일 등기
2002년 06월 22일 사임	2002년 07월 03일 등기
<del>이사 이영현 581214 *****</del>	
2001년 01월 08일 취임	2001년 01월 09일 등기
2002년 08월 17일 사임	2002년 08월 20일 등기
<del>이사 조영석 630903 *****</del>	
2001년 11월 16일 취임	2001년 11월 27일 등기
2003년 08월 26일 사임	2003년 09월 23일 등기
<del>이사 정혜범 550823 *****</del>	
2002년 06월 22일 취임	2002년 07월 03일 등기
2005년 03월 25일 사임	2005년 04월 01일 등기
2005년 03월 25일 취임	2005년 04월 01일 등기
2007년 03월 16일 사임	2007년 03월 20일 등기
<del>이사 변태희 521218 *****</del>	
2002년 06월 22일 취임	2002년 08월 20일 등기
2005년 03월 25일 사임	2005년 04월 01일 등기
2005년 03월 25일 취임	2005년 04월 01일 등기
2007년 06월 30일 사임	2007년 07월 09일 등기
<del>감사 오성경 660828 *****</del>	
2003년 03월 21일 취임	2003년 03월 27일 등기
2006년 03월 23일 중임	2006년 03월 28일 등기
2007년 03월 16일 사임	2007년 03월 20일 등기
<del>이사 노재욱 590326 *****</del>	
2006년 03월 23일 취임	2006년 03월 28일 등기
<del>사내이사 노재욱 590326 *****</del>	
2009년 03월 20일 중임	2009년 03월 24일 등기
2011년 10월 31일 사임	2011년 11월 03일 등기
<del>이사 이일규 641128 *****</del>	
2007년 03월 16일 취임	2007년 03월 20일 등기
<del>사내이사 이일규 641128 *****</del>	
2010년 03월 26일 중임	2010년 04월 02일 등기
2013년 03월 22일 중임	2013년 03월 28일 등기
<del>이사 강연준 650601 *****</del>	
2007년 03월 16일 취임	2007년 03월 20일 등기
2010년 03월 26일 퇴임	2010년 04월 02일 등기
<del>이사 이용무 661215 *****</del>	
2007년 03월 16일 취임	2007년 03월 20일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5년11월10일 10시01분22초

등기번호	136166	
2010년 03월 26일 퇴임	2010년 04월 02일 등기	
<del>감사 이선직 340426-*****</del>		
2007년 03월 16일 취임	2007년 03월 20일 등기	
2010년 03월 26일 퇴임	2010년 04월 02일 등기	
<del>이사 손경준 650726-*****</del>		
2008년 03월 20일 취임	2008년 03월 24일 등기	
2010년 03월 26일 사임	2010년 04월 02일 등기	
<del>이사 엄태관 630315-*****</del>		
2008년 03월 20일 취임	2008년 03월 24일 등기	
사내이사 엄태관 630315-*****		
2011년 03월 18일 중입	2011년 03월 22일 등기	
2014년 03월 21일 중입	2014년 04월 03일 등기	
<del>사외이사 황농문 580103-*****</del>		
2010년 03월 26일 취임	2010년 04월 02일 등기	
2013년 03월 22일 퇴임	2013년 03월 28일 등기	
<del>사외이사 이해신 731214-*****</del>		
2010년 03월 26일 취임	2010년 04월 02일 등기	
2013년 03월 22일 중입	2013년 03월 28일 등기	
<del>감사 한상국 460515-*****</del>		
2010년 03월 26일 취임	2010년 04월 02일 등기	
2013년 03월 22일 퇴임	2013년 03월 28일 등기	
<del>사내이사 문병점 620730-*****</del>		
2011년 03월 18일 취임	2011년 03월 22일 등기	
2014년 03월 21일 중입	2014년 04월 03일 등기	
<del>사외이사 이용무 661215-*****</del>		
2011년 03월 18일 취임	2011년 03월 22일 등기	
2014년 03월 21일 퇴임	2014년 04월 03일 등기	
<del>사내이사 김정곤 601125-*****</del>		
2012년 03월 28일 취임	2012년 04월 05일 등기	
2015년 03월 18일 중입	2015년 03월 23일 등기	
<del>감사 신재용 510612-*****</del>		
2013년 03월 22일 취임	2013년 03월 28일 등기	
<del>사외이사 김명래 500322-*****</del>		
2014년 03월 21일 취임	2014년 04월 03일 등기	

기 타 사 황

1. 주식양도의 제한규정

- (1) 당 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는 이사회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당 회사의 주식을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에는 이사회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1999년 12월 14일 주식양도의 제한규정폐지

1999년 12월 17일 등기

\*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5년11월10일 10시01분22초

등기번호

136166

명의개서대리인

1.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증권에탁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2000년 08월 18일 설치 2000년 08월 31일 등기

1.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증권에탁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2002년 09월 11일 주소변경 2002년 10월 02일 등기

1.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증권에탁결제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2005년 01월 29일 변경 2005년 02월 01일 등기

1.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에탁결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2009년 02월 04일 변경 2009년 02월 16일 등기

1. 합병

2002년 8월 20일 부산 연제구 거제3동 38-44 오스탬임프란트 주식회사를 합병

2002년 08월 20일 등기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 규정

①이사회 결의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2005년 07월 11일 신설 2005년 07월 12일 등기

1. 이익에 의한 주식 소각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2012년 04월 15일 변경 2012년 04월 17일 등기

1. 우선주식의 내용

①상환권과 전환권이 부여되고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이다.

②배당금에 관한 사항

1. 최저이익배당률은 발행가의 연9%로 한다.

단, 주주가 상환을 요청하기 전까지의 배당률은 연1%로 한다.

2. 최저 배당율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 경우 최저이익배당율과 현실배당율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다음해로 누적하여 배당한다.

3. 보통주의 배당률을 최저이익배당율보다 높게 정한 영업연도에는 보통주의 배당률과 최저이익배당율과의 차이를 추가로 배당한다.

4.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우선주의 인수가액 및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한도까지 다른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청구권을 가진다.

③회사가 상환청구 할 경우의 상환에 관한 사항

1. 상환금액은 우선주 인수가액에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을 하한으로 한 시기로 한다.

2. 상환기간은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날로부터 보통주로 전환하기위한 전환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136166
------	--------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일까지로 한다.

3. 상환방법과수는 상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 전에 서면으로 소각의 통지하고 상환일에 현금상환하고, 상환하는 주식의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 수량으로 한다.

④주주가 상환 청구할 경우의 상환에 관한 사항

1. 상환금액은 우선주 인수금액에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을 하한으로 한 시가로 한다.

2. 상환기간은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로부터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날까지로 한다.

3. 상환방법과수는 상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전에 상환청구서를 발송하고, 상환하는 주식의 수는 주주가 정한 수량으로 한다.

⑤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 기간은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그 기간동안 전환청구가 있는 날부터 보통주로 전환된다.

2.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대 보통주의 비율을 1대1로하나 다음의 경우에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가. 코스닥 또는 증권거래소 시장에 등록 또는 상장시 공모가격이 우선주의 일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공모가격으로 하향조정한다.

나. 합병시 기업가치를 하회하는 방식으로 합병이 될 경우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우선주주주의 손실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자본의 감소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본감소 직전에 우선주-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우선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라. 우선주식 주주는 위 가.나.다.의 전환가격중에서 최저가격을 선택하여서 전환하거나, 전환가격 조정시유기 증첩적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주주가 선택하는 전환가격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전환가격으로 전환 할 수 있다.

3. 우선주식의 발행이후 우선주의 인수가격의 이하의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유상증지,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도 동일하게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한다.

4.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조정전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한다.

⑥신주인수권

우선주는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 받을 권리가 있다.

2005년 07월 15일 변경      2005년 07월 25일 등기  
 2007년 02월 23일 말소      2007년 02월 26일 등기

**전 환 사 채**

1. 사채의 종류 : 기명식 보증 서모전환사채  
 2. 전환사채의 총액 : 9억원  
 3. 액면금액 및 권종수 : 9억원권 1매  
 4.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9억원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5년11월10일 10시01분22초

등기번호

136166

5. 사채의 전환에 관한 사항

- 1) 이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전환비율 : 사채인수금액중 전부 또는 일부
- 3) 전환가격 : 1주당 금7,500원
-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1주의 금액 금500원의 보통주식
- 5)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2002년 7월 2일부터 각 사채의 상환기일 직 전일까지
- 6) 전환가격의 조정
  - (1)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이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금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조정 후 전환가격 =

$$\frac{(\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text{1주당 발행가액})}{\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 (2)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금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아래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사채권자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 조정 후 전환가격 =

$$\frac{\text{조정전} \text{ 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text{1주당 발행가액/시가})}{\text{전환가액} \times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 (4)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이 조정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채발행자의 사채권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5)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2001년 07월 03일 등기 >

- 1. 사채의 종류 : 기명식 보증 사모전환사채
- 2. 전환사채의 총액 : 9억원
- 3. 액면금액 및 권중수 : 9억원권 1매
- 4.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9억원
- 5. 사채의 전환에 관한 사항

- 1) 이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전환비율 : 사채인수금액중 전부 또는 일부
- 3) 전환가격 : 1주당 금7,500원
-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1주의 금액 금500원의 보통주식 <2001년 7월 30일 결정>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136166
------	--------

5)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2002년 7월 2일부터 각 사채의 상환기일 직 전일까지

6) 전환가격의 조정

(1)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이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frac{(\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text{1주당 발행가액})}{\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2)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아래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사채권자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frac{\text{조정전} \text{ 기 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text{1주당 발행가액/시가})}{\text{전환가액} \times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4)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이 조정 필요한 경우에는 사채발행자의 사채권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증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2001년 07월 30일 등기 >

2003년 8월 13일 제1회 전환사채 전부상환

< 2003년 08월 26일 등기 >

전 환 사 채

1.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시모전환사채

2. 전환사채의 총액 : 7억5천만원

3. 액면금액 및 권종수 : 7억5천만원권 1매

4.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7억5천만원

5. 사채의 전환에 관한 사항

1) 이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금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는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의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전환가격 : 1주당 금 3,000원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136166
------	--------

-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1주의 금액 금500원의 보통주식  
 5)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2001년 10월 27일부터 각 사채의 상환일 전 일까지  
 6) 전환가격의 조정

(1)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격 \times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times 1주당 발행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와 사채발행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3) 2001년 매출 100억원 및 경상이익 10억원 미만시 전환가액을 금 2,000원으로 조정한다.  
 (4) 전환청구권 한국증권업협회가 개설한 협회중개시장(이하 '코스닥'이라 한다)에 등록시 공모가가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공모가의 120%로 조정한다.  
 (5) 코스닥 등록후 전환청구 시점의 주가가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 또는 최근일 종가, 또는 전환청구일 전 3영업일 전의 종가중 높은 가액으로 전환가를 조정한다. 단 코스닥등록후 주가가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2,000원 이상 유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6) 위 (1)호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2001년 07월 30일 등기 >

1.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사모전환사채
2. 전환사채의 총액 : 7억5천만원
3. 액면금액 및 권중수 : 7억5천만원권 1매
4.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7억5천만원
5. 사채의 전환에 관한 사항

1) 이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금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의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전환가격 : 1주당 금 3,000원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1주의 금액 금500원의 보통주식

5)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2년 7월 27일부터 사채의 상환일 전일까지로 한다.

6) 전환가격의 조정

(1)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136166
------	--------

조정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격x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x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와 사채발행기간의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3) 2001년 매출 100억원 및 경상이익 10억원 미만시 전환가액을 금 2,000원으로 조정한다.
  - (4) 전환청구권 한국증권업협회가 개설한 협회중개시장(이하 '코스닥'이라 한다)에 등록사 공모가가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공모가의 120%로 조정한다.
  - (5) 코스닥 등록후 전환청구 시점의 주가가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 또는 최근일 종가, 또는 전환청구일 전 3영업일 전의 종가중 높은 가액으로 전환가를 조정한다. 단 코스닥등록후 주가가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2,000원 이상 유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 (6) 위 (1)호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2002년 04월 04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결정 2002년 04월 04일 등기 >

제2회 기명식 사모전환사채 전부상환

< 2004년 07월 27일 변경 2005년 04월 01일 등기 >

### 전 환 사 채

#### 제3회 전환사채

1.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사모전환사채
2. 전환사채의 총액 : 7억5천만원
3. 액면금액 및 권종수 : 금 1천만원권 74매, 금1백만원권 10매
4.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7억5천만원
5. 사채의 전환에 관한 사항
  - 1) 이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전환비율 : 사채권면 금액 100%에 해당하는 범위내로 한다.
  - 3) 전환가격 : 1주당 금3,000원(1주당 액면가 500원 기준).
  -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1주의 금액 금500원의 보통주식.
  - 5)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상환일 15일전까지로 한다.
  - 6) 전환가격의 조정
    - (1) 전환가격이 정해진 이후 전환청구하기 전까지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구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을 정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5년11월10일 10시01분22초

등기번호

136166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신주발행주식수)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 (2) 사채발행회사가 2001년 매출 100억원 및 경상이익 10억원을 달성하지 못할 시 전환가액을 금 2,000원으로 조정한다.
- (3) 전환청구권 한국증권협회에서 개설한 협회증개시장(코스닥)에 등록사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사 공모가가 2,000원에 미만이 전환가액을 공모가의 120%로 조정한다.
- (4) 등록 또는 상장후 전환청구 시점의 주가가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또는 최근일 종가, 또는 전환청구일전 3 영업일전 종가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전환가를 조정한다. 단, 관련 법령, 법규, 규정, 협약 등의 사유로 사채권자의 매각이 제한된 기간을 제외하고 등록 또는 상장후 주가가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2,000원이상 유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상장후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 7) 전환주식수 : 사채권면 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 수는 해당금액을 사채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2001년 09월 06일 등기 >

제3회 전환사채

- 1.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사모전환사채
- 2. 전환사채의 총액 : 7억5천만원
- 3. 액면금액 및 권중수 : 금 1천만원권 74매, 금1백만원권 10매
- 4.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7억5천만원
- 5. 사채의 전환에 관한 사항
  - 1) 이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전환비율 : 사채권면 금액 100%에 해당하는 범위내로 한다.
  - 3) 전환가격 : 1주당 금3,000원(1주당 액면가 500원 기준).
  -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1주의 금액 금500원의 보통주식.
  - 5)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사채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02년 9월 5일부터 사채의 상환일 전일까지로 한다.
  - 6) 전환가격의 조정
    - (1) 전환가격이 정해진 이후 전환청구하기 전까지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와 구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을 정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신주발행주식수)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2) 사채발행회사가 2001년 매출 100억원 및 경상이익 10억원을 달성하지 못할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5년11월10일 10시01분22초

등기번호	136166
------	--------

시 전환가액을 금 2,000원으로 조정한다.

(3) 전환청구전 한국증권업협회가 개설한 협회증개시장(코스닥)에 등록사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사 공모가가 2,000원에 미만시 전환가액을 공모가의 120%로 조정한다.

(4) 등록 또는 상장후 전환청구 시점의 주가가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환 청구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출평균한 가액, 또는 최근일 종가, 또는 전환청구일전 3 영업일전 종가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전환가를 조정한다. 단, 관련 법령, 법규, 규정, 협약 등의 사유로 사채권자의 매각이 제한된 기간을 제외하고 등록 또는 상장후 주가가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2,000원이상 유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상장후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7) 전환주식수 : 사채권면 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 수는 해당금액을 사채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2002년 04월 04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경정 2002년 04월 04일 등기 >

제3회 기명식 사모전환사채 전부상환  
< 2003년 12월 30일 변경 2005년 04월 01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4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 금300,000,000원정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 금삼억원권 1종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 : 금300,000,000원정(사채권면액의 100%)
4. 본 사채는 이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5. 전환의 조건:

- 가. 전환비율 : 사채권면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합산금액)의 100%를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으로 하고, 1주미만의 단주수에 대하여는 상당하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수 대금의 해당기간 이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면금액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 나. 전환가격 : 본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보통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기준 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출평균한 가액과 최종일 종가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 기준주가 10,000원의 100%에 해당하는 금10,000원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 다. 전환가액의 조정
  - 1) 전환청구전에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가하거나 기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frac{\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text{1주당 발행가격}} \text{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5년11월10일 10시01분22초

등기번호	136166
------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에 의한 기발행 주식수는 조정후 전환가격의 적용일 직전 월말 현재에의 주식수로 함.

2)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권사의 협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3) 제1항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오스템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7.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02년 11월 30일부터 각 사채의 상환기일 전 까지로 한다.)

< 2003년 06월 20일 경정      2003년 06월 20일 등기 >  
제4회 무보증전환사채 전부상환

< 2005년 01월 26일 변경      2005년 04월 01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5회 전환사채

1.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전환사채

2. 전환사채의 총액 : 금2,000,000,000원정

3. 액면금액 및 권중수 : 육억원권2매, 이억원권4매

4.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금2,000,000,000원정

5. 사채의 전환에 관한 사항

1) 이 사채는 전환권을 가진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채의 인수금액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액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3) 전환가격 : 1주당 금2,000원정

4) 전환비율 : 각 사채의 액면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동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수비율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6. 전환가격의 조정

1) 전환 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 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피투자기업의 기발행 전환사채의 전환은 제외)의 구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을 정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원단위미만 절사)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격)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피투자기업이 특약에 의하여 정하는 기간까지 본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위 전환가 조정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5년11월10일 10시01분22초

등기번호

136166

2) 공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이 전환 청구를 하기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투자자의 소경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frac{\text{조정전 전환가격} *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 1\text{주당 발행가액} / \text{시가}))}{\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 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을 적용한다.

4)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와 피투자기업간의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7.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1주의 금액 금500원정의 보통주식

8.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사채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 사채의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폐쇄) 제1항의 기간중에는 전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 2003년 06월 20일 등기 >

제5회 기명식 전환사채

2005년 8월 11일 전부상환

< 2005년 08월 18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전환사채의 총액금 : 금팔억원정 (금800,000,000원)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

각 전환사채의 금액 : 금사억팔천만원 1매, 금일억육천만원 2매.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각 사채의 액면금액의 100%

전환의 조건-

1) 사채의 인수금액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액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 할 수 없다.

2) 전환가격은 주당 일만오천원(금15,000원)으로 한다.

3) 각 사채의 액면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 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주는 동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수비율에 의하여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전환가격의 조정

①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기발행 전환사채의 전환은 제외)의 구 전환가격을 하회하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136166

는 가격을 정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원단위 미만 절사)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단, 특약에 의하여 정하는 기간까지 본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위 전환가 조정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이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 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투자자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③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 무상증지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지 1주당 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지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지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을 적용한다.

④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내용 :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 2006년 6월 21일 ~ 2008년 6월 19일

< 2005년 06월 01일 변경 2005년 06월 21일 등기 >

전환사채의 총액금 : 금팔억원정 (금800,000,000원)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

각 전환사채의 금액 : 금사억팔천만원 1매, 금일억육천만원 2매.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각 사채의 액면금액의 100%

전환의 조건

- 1)사채의 인수금액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액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 할 수 없다.
2)전환가격은 주당 일만오천원(금15,000원)으로 한다.
3)각 사채의 액면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 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주는 동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수비율에 의하여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내용 :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 2008년 1월1일부터 2008년 6월19일 까지

< 2006년 08월 21일 변경 2006년 08월 28일 등기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136166
------	--------

< 2008 년 06 월 30 일 전부상환 2008 년 07 월 02 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 6 회 전환사채~~

< 2013 년 09 월 25 일 발행 2013 년 09 월 27 일 등기 >

< 2015 년 04 월 22 일 전부전환 2015 년 04 월 23 일 등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어십억원정(금2,000,000,000)~~

< 2013 년 09 월 25 일 발행 2013 년 09 월 27 일 등기 >

< 2015 년 04 월 22 일 전부전환 2015 년 04 월 23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어억원권 10매~~

< 2013 년 09 월 25 일 발행 2013 년 09 월 27 일 등기 >

< 2015 년 04 월 22 일 전부전환 2015 년 04 월 23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사채액면금액의 100퍼센트~~

< 2013 년 09 월 25 일 발행 2013 년 09 월 27 일 등기 >

< 2015 년 04 월 22 일 전부전환 2015 년 04 월 23 일 등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될 주식의 수는 사채의 액면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감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전환가격은 금28,531원임.~~

~~2. 전환가격의 조정~~

~~1)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중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지, 주식배당 또는 준  
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  
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기발  
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 감이 주권을 상장(코스닥시장 상장 포함)한 후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지를 하  
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본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  
환가격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3) 감이 주권 상장(코스닥시장 상장포함)법인인 경우 시가하락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행사가  
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르기로 한다~~

~~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매6개월마다 행사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나.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단, 그 조정된 행사가격은 최중~~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5년11월10일 10시01분22초

등기번호

136166

행사가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지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지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지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지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합니다.

5.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 비율만큼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회가격증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2013년 09월 25일 발행 2013년 09월 27일 등기 >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될 주식의 수는 사채의 액면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감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전환가격은 금23,890원임.

2. 전환가격의 조정

1)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지, 주식배당 또는 준비급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 감이 주권을 상장(코스닥시장 상장 포함)한 후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본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회가격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3) 감이 주권 상장(코스닥시장 상장포함)법인인 경우 시가하락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르기로 한다.

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매6개월마다 행사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나.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단, 그 조정된 행사가격은 최초 행사가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지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지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지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지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합니다.

5.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 비율만큼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회가격증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2014년 03월 25일 변경 2015년 04월 23일 등기 >

< 2015년 04월 22일 전부전환 2015년 04월 23일 등기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1. 가명식 보통주식

< 2013년 09월 25일 발행 2013년 09월 27일 등기 >

< 2015년 04월 22일 전부전환 2015년 04월 23일 등기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136166
------	--------

1. 전환청구기간

2014년 9월 26일로 부터 사채의 만기일 직전일 2017년 3월 24일 까지로 한다.  
 < 2013년 09월 25일 발행 2013년 09월 27일 등기 >  
 < 2015년 04월 22일 전부전환 2015년 04월 23일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

1. 주식매수선택권

< 2000년 03월 09일 설정 2000년 03월 15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회사는 임·직원에게 상법 제 340조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000년 03월 09일 설정 2000년 03월 15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증권거래법 189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006년 03월 23일 변경 2006년 03월 28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1)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증권거래법 189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006년 03월 30일 개정 2006년 03월 30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1)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추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008년 03월 20일 변경 2008년 03월 24일 등기 >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009년 03월 20일 변경 2009년 03월 24일 등기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개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5년11월10일 10시01분22초

등기번호

136166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000년 03월 09일 설정 2000년 03월 15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 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 직원으로 한다.

< 2000년 03월 09일 설정 2000년 03월 15일 등기 >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 직원 및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6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 직원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2006년 03월 23일 변경 2006년 03월 28일 등기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2)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009년 03월 20일 변경 2009년 03월 24일 등기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2)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013년 03월 22일 변경 2013년 03월 28일 등기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 2000년 03월 09일 설정 2000년 03월 15일 등기 >

5.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당해 임,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2000년 03월 09일 설정 2000년 03월 15일 등기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136166
------	--------

1.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항란의 용지로부터 이기  
 < 2000년 04월 01일 변경 2000년 04월 01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  
 할 수 없다.  
 < 2009년 03월 20일 변경 2009년 03월 24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부터 8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  
 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09년 03월 20일 변경 2009년 03월 24일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부터 8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  
 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13년 03월 22일 변경 2013년 03월 28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09년 03월 20일 변경 2009년 03월 24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1997년 01월 08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1997년 01월 08일 등기

수수료 700원 영수함 --- 이하 여백 ---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 본 등기기록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기록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5년11월10일 10시01분22초